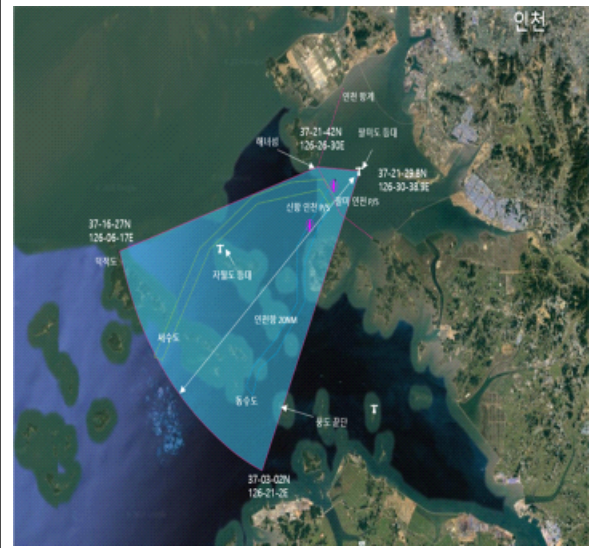


'26년도 인천항 VSR 프로그램 운영 계획

- ① **[대상해역]** 인천항 진입 항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팔미도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

<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

- 팔미도 등대(37-21-29.8N 126-30-38.9E)와 해녀섬(37-21-42N, 126-26-30E)을 연결하는 선
- 해녀섬과 덕적도 끝단(37-16-27N, 126-06-17E)을 연결하는 선
- 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37-03-02N, 126-21-02E)을 연결하는 선
- 팔미도 등대에서 덕적도 끝단(37-16-27N, 126-06-17E)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37-03-02N, 126-21-02E)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 (도착지점) 도선사 승선지점을 원칙(도선 면제 선박으로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는 선박은 도선점 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도선점을 지점으로 한다)으로 하되, 도선점보다 외해 쪽에 위치한 정박지 사용 시 정박지를 도착점으로 간주

- ② **[대상 선종]** 국제카페리선(신규추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5개 선종 중 3,000톤 이상 외항선으로써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설정

* (대상 제외 선박)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③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

- ③ **[권고속도]** 선종별 평균 속도를 고려하여 입항시 평균속도가 높은 선박은 12노트 이하, 평균속도가 낮은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설정

○ 인천항 대상선종별 권고 속도

선종	권고속도(Knots)	선박(Port-MIS Code)
국제카페리선	12	13
컨테이너선	12	41
자동차운반선	12	27
LNG운반선	10	56
세미컨테이너선	10	42

※ 필요시 항만 대기질 저감 효과, 입출항 선박 등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종, 권고속도 등 세부운영방안 변경 가능('27년 8차년도 시행 시 반영)

4 [사용료 감면] 예산 5억원* 내에서 선종별 선박입출항료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 단 예산액은 금년 하반기 차년도('27년) 예산심의 확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종별 감면율) 국제카페리선(30%), 컨테이너선(30%), 자동차운반선(30%), LNG운반선(15%), 세미컨테이너선(15%)으로 구분하여 감면율 적용

○ (10%p 추가 감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 '26년 1월~3월, '26년 12월 참여 선박에 대해 10%p 추가 감면

* 국제카페리선(40%), 컨테이너선(40%), 자동차운반선(40%), LNG운반선(25%), 세미컨테이너선(25%) 감면

○ (예산 한도내 비율배분) 감면액이 지원 상한액(5억원) 초과 시 상한액 규모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

○ (60% 이상 참여시 지급) 해당선박이 연간 총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 참여준수시 인센티브 대상포함

※ 관련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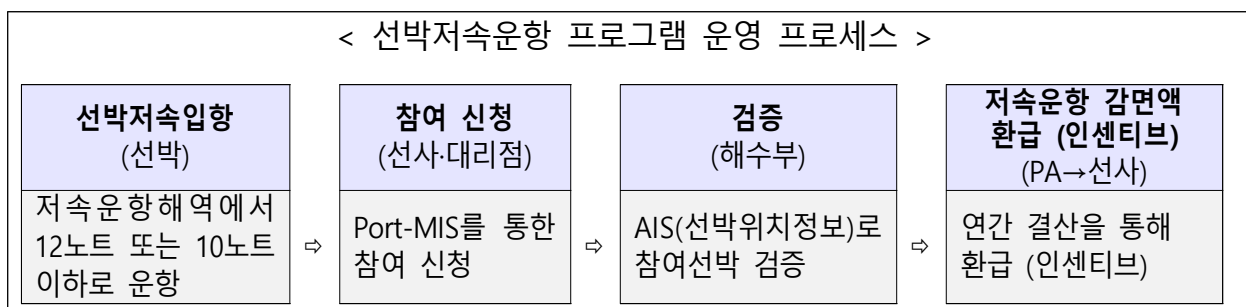
○ (기존감면액 인정) 이미 항비를 감면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컨'선 선박입출항료 100만원, 기존감면액(50만원) → 잔여50만원의 30%(15만원) 감면

※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5조 ⑥제1항부터 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단,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

5 [운영 및 검증] 7차년도는 '26.1.1일부터 적용

- (제출서류) 저속운항선박 지원신청서를 Port-MIS를 통해 제출
 *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서만 제출
- (인센티브 지급) '27년 상반기 7차년도분(2026년) 인센티브 지급, 연간 결산을 통해 선사별 일괄 지급
- (검증) 해양수산부에서 AIS 선박위치 정보로 참여선박 검증



Q 1. 저속운항해역의 시작지점과 도착지점은?

A. 선박 저속운항해역의 시작지점은 항만 내 등대 등 특정 지점으로부터 20해리 반경에 이르는 지점이며, 해당 지점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도착 지점은 도선사가 탑승하는 도선점*이며, 도선점 보다 외해 방향에 위치한 정박지를 활용하는 선박은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도선 면제 선박으로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는 선박은 도선점 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도선점을 도착지점으로 함

A. 단,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 선박에서 제외합니다.

Q 2. 저속으로 운항한 모든 선박에게 인센티브가 제공 되는지?

A. 인천항의 경우 저속운항 대상선박은 국제카페리선(2026년 신규추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총 5개 선종이며, 대상선박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 정상운항* 하여 항만에 입항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대상 선박이 됩니다.

*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③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제외

A. 또한, 해당 항만에서 해당 선박이 연간 60% 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박에게만 항비 감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2026년 신규 추가한 국제카페리선박도 2026.01.01.~2026.12.31.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60% 참여·준수 여부를 평가

Q 3. 7차년도 감면액 환급 시기는?

A. VSR 참여 항비감면 인센티브는 선박별 검증 완료 및 '26년 결산 이후 시점인 '27년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Q 4.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복 감면을 해주는지?

A. 기존 항비 감면 혜택에 의한 감면액 이후 잔액의 15%~30% 추가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 (예시) 기존 100만원의 선박입출항료에서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던 '컨'선이 프로그램 참여시 기존 감면액(50%)을 제외한 50만원의 30%인 15만원 추가 감면

A.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6.1~3, '26.12)의 경우 선박입출항료 감면을 이 상향(10%p) 적용됩니다.

Q 5. 증빙자료 제출 여부는?

A.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A. 해양수산부에서 AIS 선박위치 정보로 참여선박을 검증하며, AIS 고장 및 미설치 등으로 저속운항여부가 검증 불가능한 선박은 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 선박에서 제외됩니다.

Q6. 항만별 감면액 지급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이 초과되면 감면액이 어떻게 조정 되는지?

A. 항비감면 인센티브 대상액이 지원가능한 상한액을 초과시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항비감면 인센티브 금액을 점유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Q7. 선박의 관리 선사가 바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되나?

A. 선박의 선사/대리점 변경 시 해당 선박의 당해연도에 총 항차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급은 각 선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S선박이 '26년 10항차 중 6항차를 저속운항 참여를 통해 지급대상 선박이 되었는데 A선사 소속으로 4항차 참여, B선사 소속으로 2항차 참여하여 운항하였을 경우 총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4:2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